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

2. 제·개정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채무조정합의의 해제 요건을 정비함
- 나. 채무조정 전담인력의 요건(3년 이상 금융업 경력 등)을 정함
- 다. 법령 및 채무조정 내규 준수 여부를 평가·점검할 의무를 정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9월 12일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김한아 차장 (happy8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67

붙임.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 제정안 전문 1부. 끝.

[붙임]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

제정 2024.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개인금융채무자”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를 말하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
- “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임원(「한국주택금융공사정관」 제22조에 따른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직제 규정」 제6조에 따른 직원 및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한 개인금융채권(최초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의 채무조정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한 개인금융채권(최초 대출약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의 채무조정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한 개인금융채권(대위변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의 채무조정
4. 유동화미수채권(최초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의 채무조정

제4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은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채무조정 기본방침) ①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체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는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채무조정은 기한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 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장 채무조정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제6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 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제7조(채무조정 전담조직) ① 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에 관한 채무조정내부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역할과 책임,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채무조정 전담인력) ① 공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 및 교육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한다)가 신용·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2. 그 밖의 경우 :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3장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9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관련 법규, 모범규준, 공사의 내부 규정 및 윤리규범 등을 준수하고, 개인 금융채무자, 공사 및 기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채무조정의 안내

제10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공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인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점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2. 채무조정 요청대상

가.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요건

나. 채무조정 대상채권의 범위

다.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 채무조정 요청방법

4. 채무조정 요청 시 제출 서류

가. 채무조정요청서

나. 채무조정안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라.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 그 밖에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주요내용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밖에 공사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

6.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가. 개인금융채무자는 공사에 채무조정 요청 및 구비서류 제출

나.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다. 개인금융채무자는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라.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서 작성

마.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여 채무조정 합의 성립

7. 채무조정 합의 성립 후 변제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8.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및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② 제1항제6호의 절차 진행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해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 시에는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제5장 채무조정의 처리

제11조(채무조정 요청 및 자료 제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 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날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만, 개인금융채권의 종류가 유동화자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금융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 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③ 공사는 채무조정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제2항의 미비된 서류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및 통지) ①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내용을 심사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공사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채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포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 기본사항

2.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사유

3.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⑤ 제2항의 통지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정·보완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 채무조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 : [별표1]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조정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별표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채무조정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별표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조정

4. 유동화미수채권 : [별표4] 유동화미수채권 채무조정

제13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수정·보완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2조제3항의 채무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무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채무조정 당사자는 그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동의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시 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나.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 다.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 라. 실업(개인금융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다.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그 밖에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공사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 ②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제17조(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채무조정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

1. 공사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2. 신복위로 위탁하려는 경우

제6장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제18조(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① 공사는 임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채무조정내부기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점검·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자격요건 유지 등) 구성의 적정성
2. 임직원의 채무조정 업무 수행의 적정성
3. 채무조정의 안내의 적정성
4.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의 준수 여부
5.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미비한 점이 확인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19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공사는 채무조정 실적 평가기준에 채권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 등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등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공사는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고객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운영해야 한다.

③ 성과보상체계에는 채무조정업무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채무조정 이행 실적, 임직원의 채무조정 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할지 검토하여 운영한다.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조정

1. 채무조정의 기본원칙

가. 채무조정의 공정성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기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검토사항

(1)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조정 요청서”,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받고 기타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의 경우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한 채무조정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채무조정 요청사유의 타당성

(나)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 절차의 종료 및 그 실익 여부

(다) 채무조정이 요청인 이외의 채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2) 채무관계자의 부정대출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은 감면할 수 없다.

(3) 위 “(2)”의 단서에 불구하고 상각채권의 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없더라도 구상채권의 원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금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상의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잔여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다. 주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보아 채무조정요청서에 이를 명기하도록 하고 채무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 채무조정 요청인에 한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서에 이를 명기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효과가 요청인 이외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 채무조정 요청 처리

- (1) 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에 따라 개인 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개인금융채무자가 공사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하여 채무조정서를 작성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 채무조정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

라. 상각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감면

원금감면 대상여부, 대상자별 적용비율 및 세부업무처리 사항은 [별첨1-1]에 따른다.

2. 예상구상실익금액 산정방법

가.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

- (1) 채무조정 요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조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액(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업자가 2회 이상 감정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감정평가액)과, 해당 물건이 법원 또는 관할세무서(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포함)에 의해 경매 또는 공매 중일 때에는 최종경매·공매의 유찰 또는 낙찰가격(다만, 제1차 경매·공매의 최저가격 통지 후 제1차 경매·공매 시행 전인 경우는 제1차 경매·공매의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우선권이 있는 압류등기된 조세공과금
 - (나)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액. 다만,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담보가 등기는 포함(여타 가등기는 없는 것으로 봄)하며, 실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채권액으로 함
 -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공사보다 순위가 앞선 경우에만 인정
 - (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함

(마) 해당 부동산 등의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임의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분 포함)에 따라 기 상환한 금액

(2) 위 “(1)”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방법에 따라 조사된 가격을 대상물건의 환가 용이성, 주변여건 등을 참작하여 지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에서 위 “(1) (가)부터 (마)”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동산 유형별 적용가격

유 형	적용 가격
토지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근년도 개별공시지가 (다만, 표준지의 경우 최근년도 표준지공시지가) ② 위 ①의 가격이 없는 토지의 경우 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주택 (공동주택 포함)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근년도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다만,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인 경우 최근년도 표준주택가격) ② 위 ①의 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인접지역의 표준주택 가격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타 건물	- 한국감정원 최종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의 최상급을 적용한 금액에서「법인세법」에서 정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 을 공제한 금액

(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가정보

(다) 최근의 실제 매매가격

(3) 가등기된 부동산에 가압류, 사해행위를 사유로 한 가처분 또는 일상가사연대책임에 의하여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위 “(1)부터 (2)”까지에서 산정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상구상실익금액으로 산정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위 가등기 또는 담보가등기로 판단되거나 사해행위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제외하여 운용해야 하며 예상구상실익금액 산정방법 완화에 대한 전결권은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 의한다.

나. 기타재산

(1)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경우의 예상 구상실익금액은 채무조정 요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예상구상실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적립되었거나 적립되어야 할 금액

(나) 직전년도 1년분 근로소득 실수령액의 월할 계산액 중 압류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연간금액

(2) 임차보증금의 예상 구상실익금액은 월세, 관리비 등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감안하여 지점장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위 “(1)” 및 “(2)” 이외에 기타재산의 예상 구상실익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 증빙자료 또는 최근 매매가격,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등을 감안하여 지점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 경합채권이 있을 경우 안분계산

(1) 경합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예상 구상실익금액은 위 “가.”부터 “나.”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경합 채권자	안분적용 대상금액
1. 공사	청구금액 또는 설정액
2.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청구금액
3. 압류(집행) 채권자	압류(집행) 청구금액
4. 공사의 가압류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담보가 등기권자 포함)	설정액

(2) 경합채권자의 실채권액이 위 “(1) 1.부터 4.”의 청구금액 또는 설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라. 예상구상실익 산정 생략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지점장 전결로 채권보전조치된 목적물의 예상구상실익 산정을 생략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채권보전조치된 목적물이 위 “2. 가.” 및 “2. 나. (1)”이 아닌 경우

(2) 신청인이 원금감면 없이 채무관계자별 최소부담채무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3. 최소부담채무액 및 채무감면 범위

가.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

채무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채무관계자별 최소부담채무액과 아래 “4. 손해금의 감면”에 따른 손해금의 합계액 이상을 상환받고 나머지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채무관계자	최소부담채무액 ^{주1)}
1.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및 보증료의 합계액
2.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주2)}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의 합계액을 연대보증인 수에 1을 더하여 나눈 금액 ^{주3)}
3. 주채무 연대보증인	해당인의 채무부담액과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중 적은 금액(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잔액 기준)

주1) 채무감면 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이며, 채무관계자가 원금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비율 적용 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함.

주2) 사업자보증 구상권의 시공사는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의 최소부담채무액을 적용함

주3) 개인보증 구상권 연대보증인은 본인이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최소부담채무액으로 할 수 있음

①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 + 대지급금) ÷ (연대보증인 수 + 1)

② [(최초 대위변제금액 + 대지급금) ÷ (연대보증인 수 + 1)] - 해당인 상환금액

나. 채무감면 범위 적용 시 유의사항

(1) 해당 채무관계자(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담보물건 포함)의 예상 구상실익금액이 위 “가.”에 따른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상 구상실익금액 이상을 상환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상 구상실익금액 이하로 상환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각 채무관계자별 최소부담채무액 이상은 상환 받아야 한다.

(가) 임차보증금 또는 기타채권(분양중도금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반환청구채권 포함) 가압류 건으로서 제3채무자의 이사, 부도 등의 사유로 예상 구상실익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나) 위 “(가)” 외에 예상 구상실익금액이 여유 있더라도 구상권회수 증대를 위하여

채무관계자별 최소부담채무액을 초과하는 예상 구상실익금액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전결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 채무관계자의 지위가 중복되는 자의 최소부담채무액은 각각의 지위에 따른 채무관계자별 최소부담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채무인수인의 최소부담채무액은 피인수인의 최소부담채무액과 같다.

4. 손해금의 감면

가. 기발생손해금 감면

(1) 기발생 손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채무관계자별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손해금(위 “3. 가.”의 최소부담채무액을 산출하는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 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 2.0%

(나) 구상채권의 연대보증인 : 1.0%

(다) 상각채권의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 1.0%

(단, 상각채권의 주채무자로서 원금감면 대상자 : 0.0%)

(라) 상각채권의 연대보증인 및 기타 채무관계자 : 0.0%

(2) 대위변제금의 일부 상환으로 손해금 산출대상 대위변제금 잔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전과 변동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각각 손해금을 산출해야 한다.

(3) 위 “(1)”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손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 감면 전의 총 미수손해금에서 상환예정 손해금을 차감한 금액

(나) 연대보증인 : 감면 전의 총 미수손해금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서 상환 예정 손해금을 차감한 금액

나.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손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5. 다.”에 따른다.

다. 동시 상환시 특례

같은 구상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각각의 채무관계자가 동시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이 기준에 따른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의 최소부담채무액과 위 “가. (1) (가)”의 기준 손해금률에 따른 손해금의 합계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 채무관계자 모두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분할상환

가. 분할상환 허용기간

- (1) 채무관계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어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약정금액별 분할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구상권은 금액에 불구하고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약정금액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상환기간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8년 이내	10년 이내

- (2) 사업자 구상권으로서 위 “(1)”의 기간 이내에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나 기간을 확장하여 줌으로써 구상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 “(1)”의 기간에 각 1/2을 더한 범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5.자. 분할상환 조건변경 포함)할 수 있다.

- (3) 위 “(1)”과 “(2)”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의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분할상환 허용조건 등

- (1) 채무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자용)”에 따라 약정해야 하며 관련 채무관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분할상환약정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다.
- (2)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정총액의 5% 이상을 분할상환 약정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받아야 하며, 분할상환금은 매회 균등액으로 한다. 다만, 약정 초입금액 및 매회차별 분할상환금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구상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결권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3) 분할상환금은 매년 1회 이상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 (4) 채무자가 제출한 채무조정요청서의 소유재산 명세를 통해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확약을 받고 지점장 전결로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다.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 손해금

- (1)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금은 분할상환 약정액 중 상환되지 않은 대위변제금을 대상으로 위 “4. 가.”의 규정에 따라 기발생 손해금에 적용하는 손해금률과 동일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 (2) 위 “(1)”의 손해금은 최종 분할상환일에 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3)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가) 상각채권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 (나) 분할상환 약정액의 20% 이상을 분할상환 초입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상의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분할상환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 구상실익금액이 주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3)”에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분할상환기간 중의 발생손해금으로 상환받아야 한다. 다만,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의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라. 분할상환금의 충당순서

분할상환금의 충당순서는 보증료,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손해금,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순으로 충당한다.

마. 분할상환금 납입관리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1) 규정 제16조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2)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해 확인가능한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로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 “(가)”의 통지가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처리하고 개별반송우편물, 송달불능확인서류는 채권철에 편철 보관한다.

(3) 위 “(1)”의 규정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를 하는 때에는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 시킨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4)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때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5)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채무관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지연 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받고 분할상환 약정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6)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기 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 포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예상 구상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6)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채무관계자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바.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해 해당 물건의 예상 구상실익금액 이상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위 “가. (1)”에 의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1/2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의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2) 분할상환 약정은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에 따른다.

(3) 위 “(3)”의 규정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를 하는 때에는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 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원상회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여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서 등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 시킨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4) 분할상환금의 충당순서는 “라. 분할상환금의 충당순서”에 따른다.

6. 채무조정의 전결권

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1]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1]

<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

구 분		개인 구상권	사업자 구상권
1. 잔여채무 감면 등			
	가. 잔여채무 감면 [“1.나.(4)”] 나. 상각채권 원금감면 [“1.나.(3)”]	담당임원(본부장) 팀장	- -
2. 예상 구상실익금액 산정방법 완화 [“2.가.(3)”]		팀장	지점장
3. 예상 구상실익금액 이하 상황 허용 [“3.나.(1)”]		지점장	담당임원(본부장)
4. 기발생손해금 감면 [“4.가.(3)”]		팀장	지점장
5. 분할상환			
	가. 허용기간 이내 [“5.가.(1)” 및 “5.가.(2)”] 나. 허용기간 초과 [“5.가.(3)” 및 “5.바.(1)”] 다. 초입금 비율 5% 미만 [“5.나.(2)”] 라. 초입금 비율 5% 이상 [“5.나.(2)”]	팀장 지점장 지점장 팀장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6. 분할상환기간 중 발생손해금 감면			
	가. 일반감면 [“5.다.(1)” 및 “5.다.(3)”] 나. 예상 구상실익금액 이하 상황 허용 [“5.다.(4)”]	팀장 위 “2.”와 동일	지점장 위 “2.”와 동일

주) 항목 간 전결권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전결권자 중 상위 전결권자가 전결함

【개인보증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적용방법 및 절차】

I. 개인보증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1. 감면기준

사회배려계층을 제외한 개인보증 상각채권 채무관계자의 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된 채무조정지수에 따라 대위변제금(이하 원금)의 25%~7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아래 “4.”의 가산 원금감면을 적용 대상자에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감면율에 10%p를 가산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감면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출서류

가. 개인보증 상각채권 원금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받는다.

나. 타 기관 채무 월상환액이 있음을 원금감면 신청자가 진술하는 경우 실제 상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3.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기본 원금감면율

가. 사회배려계층을 제외한 개인보증 상각채권 채무관계자의 원금감면 시 적용할 감면율은 채무조정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한다.

< 채무조정지수 별 기본 원금감면율 >

구간	채무조정지수	기본 원금감면율
1	~ 65.0 이하	25.0%
2	65.0 초과 ~ 67.5 이하	28.0%
3	67.5 초과 ~ 70.0 이하	31.0%
4	70.0 초과 ~ 72.5 이하	34.0%
5	72.5 초과 ~ 75.0 이하	38.5%
6	75.0 초과 ~ 77.5 이하	43.0%
7	77.5 초과 ~ 80.0 이하	47.5%
8	80.0 초과 ~ 82.5 이하	52.0%
9	82.5 초과 ~ 85.0 이하	56.5%
10	85.0 초과 ~ 87.5 이하	61.0%
11	87.5 초과 ~ 90.0 이하	65.5%
12	90.0 초과 ~	70.0%

나. 채무조정지수 산정기준

$$\begin{aligned} \blacksquare \text{ 채무조정지수} &= 0.30 \times \text{상환능력지수}^{(1)} && (\text{가용소득 대비 채무 변제소요기간}) \\ &+ 0.35 \times \text{연령지수}^{(2)} && (\text{채무자 연령}) \\ &+ 0.35 \times \text{연체기간지수}^{(3)} && (\text{대위변제 후 경과기간}) \end{aligned}$$

(1) 상환능력지수

상환능력지수는 신청시점의 채무자의 가용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월)을 고려한 변제 소요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상환능력지수 >

구간	가용소득 대비 변제소요기간 ^{주)}	상환능력지수
1	~ 36개월 미만	65.0
2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75.0
3	60개월 이상 ~ 96개월 미만	85.0
4	96개월 이상 ~ 120개월 미만	95.0
5	120개월 이상 ~	100.0

주) 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 - 타기관 채무 월상환액)으로 공사 채무**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 생계비 :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단, 상각채권 원금감면 신청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일 경우 부양가족수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적용

** 공사 채무 : 채무감면 전 대위변제잔액

(2) 연령지수

연령지수는 신청시점의 채무자의 연령을 의미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연령지수 >

구간	채무자 연령	연령지수
1	~ 만 35세 미만	70.0
2	만 35세 이상 ~ 만 40세 미만	75.0
3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80.0
4	만 45세 이상 ~ 만 50세 미만	85.0
5	만 50세 이상 ~ 만 55세 미만	90.0
6	만 55세 이상 ~ 만 60세 미만	95.0
7	만 6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0

(3) 연체기간지수

연체기간지수는 채권의 대위변제 후 신청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의미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연체기간지수 >

구간	대위변제 후 경과기간	연체기간지수
1	~ 5년 미만	60.0
2	5년 이상 ~ 10년 미만	70.0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80.0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90.0
5	20년 이상 ~	100.0

4. 가산 원금감면율

개인보증 상각채권 채무관계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기본 원금감면율에 가산 원금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가산 원금감면율 적용 대상자 >

대상자	요건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재난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중 이면서 소득 감소가 인정되는 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로자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사업주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소득 감소가 인정되는 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주 또는 해당 업종의 근로자로서 소득 감소가 인정되는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사실을 증빙 가능한 자

II.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원금감면

1. 감면기준

개인보증 상각채권 채무관계자가 사회배려계층인 경우 원금의 최대 70%~9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인 개인보증 상각채권 채무관계자의 원금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사회배려계층 증명서만 제출받을 수 있다.

3. 세부 감면사항

< 사회배려계층별 감면을 및 세부 확인방법 >

감면 율	명 칭	요 건	증명서 / 발급처
최대 9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고, 대위변제금잔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수급자증명원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고, 대위변제금잔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 주민센터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고, 대위변제금잔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확인서 / 국가보훈부(지청),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원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70세 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본인실명확인증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부(지청),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최대 70%	5·18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 (최초발급) 국가보훈부, (기발급자)주민센터
	70세 이상자의 부양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인 자를 부양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최초발급)국가보훈부, (기발급자)주민센터
	군복무자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입영확인서/ 병무청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상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주1)}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주민센터) 등 6종 ^{주2)}
노숙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 증명서 / 노숙자 보호 시설 발행
다자녀 부양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2명이상 부양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미성년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증명서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사망자	사망자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 의무자	사망확인서 / 병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실종자	실종자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 의무자	법원실종선고서, 상속인 입증 증명서 등 / 관할법원 및 주민센터
탈성매매여성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신용회복지원 추천서 /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 발급
이재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이재민	이재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 거주지 관공서
장기입원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비연속 포함)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병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장애인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주민등록말소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	주민등록표초본(말소사항 포함)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신혼가구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퇴소확인증 / 아동복지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로 채무조정의 특례를 요청하는 자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급

주1) 다음 ① ~ ⑤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②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 대상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자

주2) 다음 ① ~ ⑥의 서류 중 택1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③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⑥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Ⅲ. 원금감면 제외대상자 및 세부 확인방법

1. 원금감면 제외대상자 및 판단기준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대상자별 판단기준
1. 주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소유의 구상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한 채무자	- 채무감면 신청 채무관계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금액이 원금 감면비율을 적용한 후 최소부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 예상구상실익과 원금 감면비율을 적용한 후 최소부담채무액의 합계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원금감면 허용^{주1)} - 채무감면 신청 채무관계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금액이 원금 감면비율을 적용한 후 최소부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 예상구상실익과 원금 감면비율을 적용한 후 최소부담채무액의 합계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원금감면 허용^{주2)}
2.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소재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이외 소재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규모가 100㎡를 초과하는 자로 정함 - 위의 주택 규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보증부대출의 용도와 사용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상의 “부실자료제출 의심자 및 확정자”
4.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면책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취소된 자
5. 그 밖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거나 사회통념상 원금감면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등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	—

주1) 예상구상실익 + 보증료 + {max(대위변제금 - 예상구상실익, 0) × (1 - 원금감면율)} + 대지급금

주2) 예상구상실익 + 보증료 + [{max(대위변제금 - 예상구상실익, 0) × (1 - 원금감면율)} + 대지급금 ÷ (연대보증인 수 + 1)]

2. 운영방안

가. “원금감면 제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원금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채무감면에 따라 채무조정지원

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감면 신청시 원금감면 제외대상자 여부는 공사의 지점에서 직접 판단하여 채권신고와 동시에 위원회에 통보

[별표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채무조정

1. 적용원칙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조정을 준용한다.

2. 자체 채무조정

가.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이하 “권리행사가능금액”)이 있는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조정 요청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용)”를 제출받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다. 검토결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무조정신청일 기준 권리행사가능금액에 대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라. 분할상환 약정은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따른다.

마. 분할상환금의 충당순서는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별표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조정

1. 적용원칙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조정을 준용한다.

2. 자체 채무조정

가. 주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 조정요청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용)”를 제출받고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나. 강제집행 종료 전의 분할상환은 상환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고 있는 도중에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는 허용하지 않는다.

[별표4]

유동화미수채권 채무조정

1. 채무조정의 기본원칙

가. 검토사항

- (1)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조정요청서(유동화미수채권용)”(이하 “채무조정요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받고, 기타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받으며,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의 경우 “채무조정요청서”는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한 “채무조정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채무조정 요청사유의 타당성
 - (나)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 절차의 종료 및 그 실효 여부
 - (다) 채무조정이 요청인 이외의 채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2) 미수채권의 원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금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위 (1)의 “채무조정요청서” 없이 잔여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 (3)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보아 “채무조정요청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채무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 (4) 채무조정 요청인에 한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서”에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고 채무조정 효과가 요청인 이외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5) 원금감면 대상여부, 대상자별 적용비율 및 세부업무처리 사항은 [별첨2-1] “유동화미수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기준”에 따른다.

나. 채무조정의 범위

- (1) 채무의 조정은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원금 및 대지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채무관계자가 [별첨2-1] “유동화미수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기준”에서 정하는 원금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후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 (2) 위 “(1)”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채무관계자 소유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실익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3) 위 “(2)”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회수실익금액 이하로 상환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위“(1)”에 따른 원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 이상은 상환 받아야 한다.

(가)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 가압류 건으로서 제3채무자의 이사,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실익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나) 위 “(가)” 외에 회수실익금액이 여유 있더라도 미수채권회수 증대를 위하여 회수실익금액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전결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다. 채무조정 요청 처리

(1) 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첨부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공사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하여 채무조정서를 작성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 채무조정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

2. 분할상환

가. 분할상환 허용조건 등

(1) 채무관계자가 미수채권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10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정총액의 5%이상을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받아야 하며, 분할상환금은 매회 균등액으로 한다. 다만, 약정 초입금액 및 매회차별 분할상환금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분할상환금의 충당순서는 원금, 대지급금, 이자, 지연배상금 순으로 충당한다.

(4) 분할상환금은 매년 1회 이상 상환되도록 한다.

(5)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를 위해 예상회수실익 이상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가)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위 “(1)”에 의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1/2범위 이내로 해

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나) 분할상환 약정은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유동화미수채권 채무자용)”에 따른다.

나.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 지연배상금

(1)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은 분할상환 약정액 중 상환되지 아니한 원금을 대상으로 기발생 지연배상금률(배당기일 익일부터 계산되는 지연배상금)과 동일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2) 위 “(1)”의 지연배상금은 최종 분할상환기일에 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학자금 미수채권인 경우

(나) 분할상환 약정액의 20% 이상을 분할상환 초입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분할상환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회수실익금액이 주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3)”에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분할상환기간 중의 지연배상금으로 상환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다. 분할상환금 납입관리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1)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해 확인가능한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로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 “(가)”의 통지가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처리하고 개별반송우편물, 송달불능확인서류는 채권철에 편철 보관한다.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를 하는 때에는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유동화미수채권 채무자용)”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 시킨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 (3)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때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별첨2]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구 분		전결권
1. 원금감면 [“1.가.(5)”]		지점장
2. 회수실익금액 이하 상환 허용 [“1.나.(3)”]		지점장
3. 분할상환		
	가. 허용기간 이내 [“2.가.(1)”] 나. 허용기간 초과 [“2.가.(1) 및 2.가.(5)”]	지점장 담당 본부장
4. 채무상환요청서 제출 생략 [“1.가.(2)”]		담당 본부장
5. 분할상환기간 중 지연배상금 감면		
	가. 일반감면 [“2.나.(1) 및 2.나.(3)”] 나. 회수실익금액 이하 상환 허용 [“2.나.(4)”]	지점장 지점장

주) 항목간 전결권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전결권자 중 상위 전결권자가 전결함

[별첨2-1] 유동화미수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기준

유동화미수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기준

I. 원금감면 대상자 및 감면기준

1.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원금감면

가. 감면기준

사회소외계층을 제외한 채무관계자의 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된 채무조정지수에 따라 원금의 최대 20%~7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나. 제출서류

- (1) 원금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받는다.
- (2) 타 기관 채무 월상환액이 있음을 원금감면 신청자가 진술하는 경우 실제 상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다.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원금감면율

- (1) 사회소외계층을 제외한 채무관계자의 원금감면 시 적용할 최대 감면율은 채무조정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한다.

< 채무조정지수 별 원금감면율 >

구간	채무조정지수	원금감면율
1	~ 70.0 이하	20.0%
2	70.0 초과 ~ 72.0 이하	25.0%
3	72.0 초과 ~ 74.0 이하	30.0%
4	74.0 초과 ~ 76.0 이하	35.0%
5	76.0 초과 ~ 78.0 이하	40.0%
6	78.0 초과 ~ 80.0 이하	45.0%
7	80.0 초과 ~ 83.0 이하	50.0%
8	83.0 초과 ~ 86.0 이하	55.0%
9	86.0 초과 ~ 88.0 이하	60.0%
10	88.0 초과 ~ 90.0 이하	65.0%
11	90.0 초과 ~	70.0%

(2) 채무조정지수 산정기준

■ 채무조정지수	=	0.35 × 상환능력지수 ^(가)	(가용소득 대비 채무 변제소요기간)
		+ 0.35 × 연령지수 ^(나)	(채무자 연령)
		+ 0.30 × 연체기간지수 ^(다)	(미수채권등록 후 경과기간)

(가) 상환능력지수

상환능력지수는 신청시점의 채무자의 가용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월)을 고려한 변제소요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상환능력지수 >

구간	가용소득 대비 변제소요기간 ^{주)}	상환능력지수
1	~ 36개월 미만	65.0
2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75.0
3	60개월 이상 ~ 96개월 미만	85.0
4	96개월 이상 ~ 120개월 미만	95.0
5	120개월 이상 ~	100.0

주) 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 - 타기관 채무 월상환액)으로 공사 채무**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 생계비 :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단, 원금감면 신청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일 경우 부양가족수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적용
 ** 공사 채무 : 채무조정 전 미수채권잔액

(나) 연령지수

연령지수는 신청시점의 채무자의 연령을 의미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연령지수 >

구간	채무자 연령	연령지수
1	~ 만 30세 미만	65.0
2	만 30세 이상 ~ 만 40세 미만	75.0
3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80.0
4	만 5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90.0
5	만 6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0

(다) 연체기간지수

연체기간지수는 채권의 미수채권등록(수관 포함) 후 신청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의미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연체기간지수 >

구간	미수채권 등록 후 경과기간	연체기간지수
1	~ 5년 미만	60.0
2	5년 이상 ~ 10년 미만	70.0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80.0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90.0
5	20년 이상 ~	100.0

2.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원금감면

가. 감면기준

채무관계자가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원금의 최대 70%~9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나. 세부 감면사항

< 사회소외계층별 감면을 및 세부 확인방법 >

감면 율	명 칭	요 건	증명서 / 발급처
최대 9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고, 미수채권잔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수급자증명원 / 구청, 주민센터, 정부 24(공인인증서 필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고, 미수채권잔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 주민센터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고, 미수채권잔액 합계가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확인서 / 보훈(지)청,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원 / 구청, 주민센터, 정부 24(공인인증서 필요)
	70세 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본인실명확인증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지)청,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최대 70%	5·18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 (최초발급) 국가보훈처, (기발급자)주민센터
	70세 이상자의 부양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인 자를 부양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최초발급)국가보훈처, (기발급자)주민센터
	구속수감자	신청일 현재 구속수감 중이면서 잔여형기가 2년 이상인 자	수용증명서 / 교도소장 발행
	군복무자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입영확인서/ 병무청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상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주 1)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주민센터) 등 6종(주2)
	노숙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 증명서 / 노숙자 보호 시설 발행
	다자녀 부양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3명이상 부양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미성년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증명서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사망자	사망자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	사망확인서 / 병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실종자	실종자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	법원실종선고서, 상속인 입증 증명서 등 / 관할법원 및 주민센터
	탈성매매여성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4	신용회복지원 추천서 / 여성가족부 지

감면 율	명 칭	요 건	증명서 / 발급처
		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원 시설 발급
	이재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이재민	이재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 거주지 관공서
	장기입원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비연속 포함)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병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6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장애인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주민등록말소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로 채무조정의 특례를 요청하는 자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급

주1) 다음 ① ~ ⑤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②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 대상자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자

주2) 다음 ① ~ ⑥의 서류 중 택1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③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⑥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3. 개인회생 면책된 자(유동화미수채권 누락자)에 대한 원금감면

가. 대상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공사의 유동화미수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어 공사가 채권행사 중인 채무관계자(단, 대출실행일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나. 감면기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소상환 원금 이상 상환 받는다.

$$\text{최소상환 원금} = \text{변제계획 인가일 당시 원금잔액} \times \text{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율} \\ - \text{변제계획 인가일 이후 회수한 원금}$$

4.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채무가 조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II. 원금감면 제외대상자 및 세부 확인방법

1. 원금감면 제외대상자 및 판단기준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대상자별 판단기준
1. 주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소유의 회수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한 채무자	- 채무조정 신청 채무관계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회수실익금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채무관계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회수실익금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2.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소재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이외 소재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규모가 100㎡를 초과하는 자로 정함 - 위의 주택 규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용도외 사용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나 공사의 미수채권행사 과정에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자
4.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면책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취소된 자
5. 그 밖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거나 사회통념상 원금감면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등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	-

2. 운영방안

“원금감면 제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원금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지원